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 주의 요구

제 목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 평가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구, ○구, ○구, ○○군

징 계 대 상 자 ① 울산광역시 ○○군 ○○○○과 지방○○○○ ○○○
(전 ○구 ○○○○과)

② 울산광역시 ○○○○과 지방○○○○○ ○○○
(전 ○구 ○○○○과)

③ 울산광역시 ○○군 ○○○○과 지방○○○○○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내 용

위 관련자 중 지방○○○○ ○○○은 2007. 1. 29.부터 2016. 1. 12.까지, 지방○○○○○ ○○○은 2013. 7. 12.부터 2018. 1. 11.까지, 지방○○○○○ ○○○은 2016. 1. 14.부터 2018. 1. 12.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관련업무를 수행하였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청¹⁾(이하 ‘지적소관청’²⁾ 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³⁾에게 대행하고 있

1) ○구, ○구, ○구, ○구, ○○군

2)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3)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를 대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시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2호, 2016. 5. 25. 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적용⁴⁾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기준 제3조에 따르면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구·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특허 활용실적 평가 부적정

○구, ○구, ○○군에서는 [표1]과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에 관한 공고(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포함하고 있음)를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자를 선정하고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토록 하였다.

[표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소관청	공고일	사업명	대행비용	사업기간	선정된 대행자
1	○구청	2015.06.18	○○1지구	31,350	2016. 1. 7. ~ 2016. 12. 31.	○○○○정보공사 ○○지사
2	○구청	2016.02.05	○○지구	56,925	2016. 3. 9. ~ 2016. 12. 31.	○○○○정보공사 ○○지사
3	○구청	2016.06.09	○○지구	26,538	2016. 7. 11. ~ 2016. 12. 31.	○○○○정보공사 ○○지사
4	○○군청	2017.05.08	○동 ○○1지구	46,035	2016. 6. 9. ~ 2017. 12. 15.	○○○○정보공사 ○○지사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선정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평가결과 평점이 최고점인 자를 대행자로 선정하며, 1개의 지적측량수행자만이 단독으로 대행자 신청을 하였을 때는 평가결과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4)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감점 등 총 9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을 고시하고, 지적소관청에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적소관청에서는 동 고시 기준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음

선정기준 [별표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의 가점 기술개발 평가항목에서는 특허를 개발하고 지적 또는 측량관련 업무에 직접 활용한 실적을 평가하여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대행자 선정 평가 시 특허를 개발하고 지적 또는 측량관련 업무에 직접 활용한 실적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구에서는 2015. 6. 18. 공고된 ○구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을 하면서 ○○○○정보공사가 제출한 특허는 활용실적이 없으므로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5점으로 평가⁶⁾하였고, 이로 인해 0점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대행자로 선정되지 못할 자가 대행자로 선정⁷⁾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2]와 같이 ○구 등 3개 기관에서 특허활용실적을 정상적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점수부족으로 대행자로 선정될 수 없거나 고득점 순위가 변경되는 등 특허활용실적을 잘못 평가하였다.

[표2] 특허 활용실적을 잘못 평가한 현황

연번	지적소관청	공고일	사업명	대행자 선정신청	당초 평가결과			정당 평가결과			대행자 선정 재검토
					계 (a+b)	특허활 용실적 외평가 점수(a)	특허 활용 실적 (b)	계 (c+d)	특허활 용실적 외평가 점수(a)	특허 활용 실적 (b)	
1	○구청	2015.06.18	○○1지구	○○○○정보공사 ○○지사	89	84	5	84	84	0	부적합
2	○구청	2016.02.05	○○지구	○○○○정보공사 ○○지사	89	84	5	84	84	0	부적합
3	○구청	2016.06.09	○○지구	○○○○정보공사 ○○지사	88	83	5	83	83	0	부적합
4	○○군청	2017.05.08	○○○○1지구	○○○○정보공사 ○○지사	89.7	84.7	5	84.7	84.7	0	부적합 (2위)
				㈜○○○○ 설계공사	88.3	88.3	0	88.3	88.3	0	적합 (1위)

5) 현재 한국○○진흥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6) 기술개발 평가자료로 1건의 특허증¹⁾만 제출하고 동 특허를 지적 또는 측량관련 업무에 직접 활용한 실적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활용실적 9건 이상이 있는 5점으로 평가

7)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는 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음

2.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평가 부적정

선정기준 [별표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르면 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계약중인 업무에 대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를 정량평가⁸⁾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대행자 선정 평가 시 제출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자료를 평가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2016. 6. 14. 공고된 ○○군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평가를 위해 (주)○○○○설계공사가 제출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를 평가하면서 업무중첩 1건 4점을 0건 5점으로 잘못 평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3]과 같이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잘못하였다.⁹⁾

[표3]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중첩도 평가 현황

연 번	지적 소관청	공고일	사업명 (측량업체명)	당초 평가결과			정당 평가결과		
				계 (a+b)	업무중첩도 외 평가점수(a)	업무중첩도 평가(b)	계 (c+d)	업무중첩도 외 평가점수(c)	업무 중첩도 평가(d)
1	○○군청	2016.06.14	○○1지구 (○○○○)	85	80	5	84	80	4
2	○○군청	2016.06.14	○○1지구 (○○○○)	85	80	5	84	80	4
3	○○군청	2017.05.08	○○1지구 (○○○○)	88	84	4	86	84	2
4	○○군청	2017.05.08	○○○○1 지구 (○○○○)	88.3	84.3	4	86.3	84.3	2

8) 지적측량업체가 다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이 참여할수록 득점이 낮아짐

9) 업무중첩도 평가를 잘못하였으나, 대행자 선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업무교육을 통해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 관계기관에 실적 및 경력조회를 시행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

3. 정성평가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 [별표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별표 2]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계획의 충실도(5점)와 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15점)항목은 정성평가¹⁰⁾를 하고, 평가위원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위 세부평가기준에 평가위원 선정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더라도 정성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구에서는 2015. 6. 18. 공고된 ○구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평가의 정성평가를 담당자 1인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고, 2017. 5. 4. 공고된 ○○1,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평가의 정성평가는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등 [표4]와 같이 대행계획 정성평가 내용이 지적소관청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없음에도 정성평가 평가위원 선정·운영이 동일 지적소관청내에서도 연도별로 다르거나 지적소관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측량·조사 대행계획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¹¹⁾

10)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우수(배점의 100%), 보통(배점의 60%), 미흡(배점의 20%)중 하나로 평가

11)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5개 지적소관청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성평가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마련·운영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

[표4] 측량·조사 대행계획 정성평가 위원 선정 현황

지적소관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구	-	담당자1인평가	담당자1인평가	내부직원 3명 평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활용	-	지적재조사위원회 활용	내부평가위원 선정	
○구	-	-	-	내.외부평가위원회 구성(내부: 2, 외부: 4)	
○구	-	-	담당자1인평가	담당자1인평가	
○○군	내.외부평가위원회 구성(내부: 4, 외부: 2)	내.외부평가위원회 구성(내부: 4, 외부: 2)	내.외부평가위원회 구성(내부: 4, 외부: 2)	내.외부평가위원회 구성(내부: 4, 외부: 2)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구청장, ○구청장, ○○군수는 “1항”과 관련하여

[징계] 위 관련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군수는 “2항”과 관련하여

[주의]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군수는 “3항”과 관련하여

[통보]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 시 정성평가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